④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

가. 사업개요

- (사업목적) 현장맞춤형 연구인력 양성을 통한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 공급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연구인력 확보 및 기술경쟁력 제고
- (지원규모) 총 400여개사
- (지원내용) 중소기업 현장맞춤형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(Level 1~3) 지원
- (Level 1)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을 연구인력혁신센터 에서 매칭 지원
- (Level 2)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채용된 예비 연구자의 학위별 지원금 지원

<학위별 지원금 기준>

구분	정부지원금	지원(인턴)기간	비고
학사	월 130만원	2~4개월	4대 보험 가입 필수 및
석사	월 160만원	2개월	최저시급 이상 기업 지급
박사	월 190만원	Z/∏걸	의무 이행

- (Level 3) 인턴 과정을 수료한 신진연구자에 대한 기업 내 멘토링 방식의 R&D 프로젝트(4~6개월) 수행 지원(기업당 10 ~ 12백만원)

○ 지워대상

- (지원기업)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*
 - *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
- (연구인력)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며 학위취득(예정)자(4학년 2학 기 이상) 및 구직자인 자. 단,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,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함

○ 지원조건

구 분	정부지원 연구개발비지원한도	정부출연금 비율	지원방식
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	기업당 최대 1,520만원/년	100% 이내	자유공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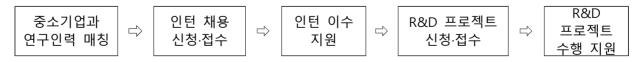
나. 추진체계 및 절차

ㅇ 추진체계



구분	역 할	
중소벤처기업부	· 사업 총괄 기본 계획 수립 · 사업 예산 지원	
	사업 정책 및 추진 방향 설정	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	· 사업 운영 총괄 · 사업 시행계획 공고, ·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, 진도점검 및 최종평가 · 사업 성과 조사·분석 총괄, 사후 관리 등	
주관연구개발기관 (연구인력혁신센터)	· 중소기업 기술수요조사, 연구인력 수급현황조사 실시 · Level 1, 2, 3 기본 프로그램 운영 · 특화 프로그램(계약학과 연계, 연구장비 등) 운영	

○ (추진절차) ① 인력 매칭 → ② 인턴 채용 신청·접수 → ③ 인턴 이수 지원 → ④ R&D 프로젝트 신청·접수 → ⑤ R&D 프로젝트 수행 지원



다. 우대사항

 초격차 스타트업 1,000⁺ 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이 R&D 프로젝트 신청 시 가점(1점) 부여

라. 신청 · 접수 방법

- (신청기간) '25. 3월 ~ 5월
- * 각 연구인력센터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하므로, 해당기관에 문의하기 바람(4. 문의처 참조)
- o (신청방법) 연구인력혁신센터별 유선 및 이메일 신청

연구인력혁신센터	전 화	이메일
한국교통대학교	(043) 841-5637	nets911@ut.ac.kr
	(0.42) 9.40 1.714	ktcjco@ut.ac.kr
	(043) 849-1714	as951523@ut.ac.kr
전북대학교	(063) 270-3656	incrit@jbnu.ac.kr
	(063) 219-5399	parkjk@jbnu.ac.kr
	(063) 270-3921	psy1218@jbnu.ac.kr
국립창원대학교	(055) 213-2918	sunny99@changwon.ac.kr
	(055) 213-2957	suemin9576@changwon.ac.kr
호서대학교	(041) 540-5369	wlduddl9002@hoseo.edu
	(041) 540-5379	oasislim@hoseo.edu

- (제출서류) 지원기업 신청서 및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 인증서 등
- * 각 연구인력혁신센터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, 해당기관에 문의하기 바람(4. 문의처 참조)

마. 유의사항

-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선정 제외
- * 선정 이후 결격사유(신청마감일 기준)가 확인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
- 신청자격 등 여부 확인을 위해 전문기관에서 선정평가 전 별도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 총괄책임자(담당자)의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